

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해나라유치원 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나라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 : 해나라유치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<p>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피성년후견인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[형법]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-

(※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.)

나. 장 소 : 해나라유치원

다. 기간 및 방법 : **2024년 3월 7일 10:00 ~ 12일 15:00 까지 직접 방문 접수(대리접수불가)**

다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유치원비치), 개인정보동의서 1부, 반명함 1매

2. 위원 선거

가. 선거일시 : 3월 20일(수)

나. 선거방법 : 학부모 모바일 투표 (정원이 충족 될 경우 무투표 당선 될 수 있음)

다.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: **6명**

라. 소견발표: 후보 1인 2분 이내 소견 발표

3. 기타

가.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결정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서, 국 · 공립 유치원 및 초 · 중 · 고의 경우처럼 심의 기능이 없습니다.

나. 당선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(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4. 3. 7.

해나라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